

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

[시행 2024.12.27]
(전부개정) 2024.12.27 조례 제291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인구경제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320-1725

제10조(청년정책 사업 추진·지원)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,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취업 및 사회·경제·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
 - 나.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
 - 다.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
2.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
 - 나.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
 - 다.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
 - 라.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
3. 청년문화·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청년 문화·예술의 활성화 지원 사업
 - 나. 청년 문화·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발굴·육성사업
4.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
 - 나.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, 홍보 사업
5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<조례 제2360호, 2017.7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조례 제2505호, 2019.4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821호, 2023.9.22.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910호, 2024.12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